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60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한 상태를 의미하며 ① 현저성, ② 조절 실패, ③ 문제적 결과¹⁾ 3요인으로 구성됨²⁾.

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는바, 2024년 기준 조사대상 124만 9,317명 중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은 22만 1,0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①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고, ② ‘조절 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며, ③ ‘문제적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2)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의존 위험군(A+B-C)	235,687	230,634	221,029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A)	188,978	181,065	174,37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B)	134,832	131,560	127,845
중복위험군(C)*	88,123	81,991	81,190

* 중복위험군 :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도 과의존 위험군인 청소년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VDT 증후군’³⁾과 같은 신체적인 이상을 겪는 것은 물론, 수면 부족으로 수업 시간에 졸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며,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 실제 세상과 격리되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의 인지적 문제를 겪기도 함.

또한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VDT 증후군이란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약자로, 안구건조증, 거북목증후군, 목 디스크 등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영상 기기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상을 의미함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모든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 및 기타 인터넷 지원 기기를 소지는 할 수 있되 사용은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되었고,

2024년에는 200개 중학교에 대하여 등교할 때 사물함에 스마트폰을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받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도입하였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여 2025년 1월부터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임.

다만, 개정안의 ‘시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 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⁴⁾하였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교육부는 최근 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4) ※ (인권위 결정문, ‘23.4.12.) 22진정0736700·0747600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규정 개정 권고

교육기본법이 유아부터 평생학습자까지 공통사항을 다루는 점, 규정 제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실시’ 등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경상남도교육청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학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력이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까지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관련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